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장 정 희 의원)

의 안 변 호	23-22
------------	-------

발의년월일: 2023. 3. .

발의자: 장정희, 강동오, 고병준, 권인순,  
백남환, 신종갑, 차해영, 한선미

## 1. 개정이유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시기 및 개최횟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대표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다.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3. 관계법령

가. 사회복지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23. 3. 17. ~ 3. 22.

나. 의견제출: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관·법인·단체시설”을 “기관·법인·단체·시설”로 한다.

제12조제5호 중 “제9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회의 개최시기 및 개최횟수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록·작성”을 “기록·보관”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생략)</p> <p>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지역사회보장 업무 담당국장 · 보건소장 · 실무협의체 위원장 각 1명과 동 <u>복지협의체</u> 위원장 중 1명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p> <p>1. (생략)</p> <p>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u>기관 · 법인 · 단체시설</u>의 대표자</p> <p>3. ~ 5. (생략)</p> <p>③ · ④ (생략)</p> <p>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p>	<p>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지역사회보장협의체</u>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u>----- -----</p> <p>3. ~ 5. (현행과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위원의 해촉) ----- ----- ----- -----</p>

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회의)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④ (생략)

제15조(회의록)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 5.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1조제1항 -----  
-----  
-----

제14조(회의) ① -----  
-----  
-----  
-----  
-----  
-----  
-----.

단, 회의 개최시기 및 개최횟수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회의록) -----  
-----  
-- 기록·보관-----.

1. ~ 5.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약칭: 사회복지급여법 )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36호, 2021. 7. 27., 타법개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복지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복지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복지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

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 3. 21.>

⑧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위원의 해촉, 회의개최, 용어수정과 관련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주민생활복지과 이진옥
연 락 처	02-3153-8824